고흥군의회 공고 제2022-16호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2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6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안업무와 역점사업 추진으로 노고가 많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생일 특별휴가 및 각종 행사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면 5일 이내 포상휴가를 신설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근거 규정과 용어 및 현행법령을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간소화하고 직원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속공무원의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제24조)

○ 소속공무원의 각종행사나 직무수행에 성과와 공로를 인정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 규정마련(제24조)

○ 용어 및 현행법령 정비 등

- 제7조(복무선서) 제2항: "소속기관의장" → "의장"

- 제24조(특별휴가) 제8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개정조례안: 별도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2. 9. 6. ~ 2022. 9. 13.(8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2) 전화 : 061-830-6065,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소속기관의 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3항,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24조제8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본인 생일이 속한 해당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⑰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각종 행사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생 략)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생 략)	제8조(출장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그 업무를 다하지 못 하거나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	② ---------- 의장----------

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 ---------- ---------- ---------- ---------- ----------.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 ---------- 의장---------- ---------- --------.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장---------- ---------- ---------- ---------- ----------.
제9조(파견근무) ① (생 략)	제9조(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 ---------- ---------- ---------- ---------- 의장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	제10조(겸임근무) ① ----- ----------

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 -- 의장---------- ----------. ---------- ---------- ---------- ------.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 ---------- ---------- ---------- ---------- 의장 ---------- ---------- ----------.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생 략)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성질·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 ---------- ----------. --- 의장-- ---------- ----------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의장---------.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 부모의 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의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	③ 의장----------

야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일수(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 ---------- ---------- ---------- ---------- ---------- ---------- ---------- ---------- ---------- ---------- ---------.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18조에 따른 연가일수 또는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의장---------- ---------- ---------- ---------- ---------- ---------- ---------- ---------- ---------- --. ----- 의장---------- ---------- ---------- ---------- ----------

	----------.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의장----- ----------. -- ---------- ---------- ---------

시행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관한 법률에 ----------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 의장- ----------
⑩ ~ ⑮ (생 략)	⑩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본인 생일이 속한 해당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⑰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각종 행사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